

수익권의 준물권성을 통한 신탁의 실체성 부여와 간접승계방식 고찰

김종해* · 김병일**

Ⅰ 목 차 Ⅱ

I. 들어가는 말	233	IV. 신탁의 실체성 부여 및 신탁을 통한 간접승계방식 도입방안	254
II. 우리나라 신탁수익권의 성격 및 경제적 실질의 한계	236	1. 세법상 수익권의 성격 조정 필요성	
1. 개 요		2. 경제적 소유자 개념을 통한 신탁의 실체성 부여 검토	
2. 우리나라 신탁법상 수익권의 성격과 한계		3. 신탁의 실체성 부여를 통한 간접승계도입 방안	
3. 세법상 '경제적 실질'의 해석적 한계		4. 수익권의 준물권성에 의한 경제적 소유자 개념을 통한 입법방안	
4. 개별세법상 한계와 문제점		V. 맺은 말	271
III. 주요국의 신탁을 통한 간접승계방식	242		
1. 미국의 신탁을 통한 간접승계방식			
2. 독일의 신탁을 통한 간접승계제도			

* 주저자 : 강남대학교 경제세무학과 (전)대우교수

** 교신저자 : 강남대학교 경제세무학과 (전)교수

*** 투고일 : 2025. 12. 30. 1차수정일 : 2026. 1. 20. 게재확정일 : 2026. 2. 5.

<국문초록>

본 연구는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의 직접승계 중심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지적하고, 신탁의 본질적 특성을 반영한 간접승계모형을 법제화하기 위해 수익권의 준물권성과 신탁의 실체성을 연결하는 단계적 방안을 제안한다.

우선, 세법상 수익권의 성격을 기존 상대적 채권에서 특정자산과 결부된 기능적 준물권(quasi-in-rem)으로 재정립해야 한다. 수익권에 대세효와 독립성을 부여하는 준물권화는 신탁재산을 위탁자나 수익자의 고유재산으로부터 분리된 독립적 권리 객체로 보는 것이다. 이는 신탁을 단순한 계약 관계를 넘어 독립적 자산의 집합체이자 법적 실체로 격상시키는 논리적 토대가 될 것이다. 즉 수익권이 물권적 성격을 가질 때 비로소 신탁은 인적 결합을 넘어 객관적 실체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수익권의 준물권적 성격은 경제적 소유자(economic owner) 개념 도입을 통해 신탁의 기능적 실체성으로 구체화된다. 법적 소유권과 경제적 이익이 분리되는 신탁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실질적 통제권과 위험 부담 여부로 과세주체를 판단하는 경제적 소유자 개념은 필수적 장치에 해당한다. 특히 위탁자의 통제권이 소멸하거나 수익자에 대해 고도로 설계된 경우, 수익권의 준물권성의 기초 위에서 신탁 자체를 하나의 독립된 경제적 실체이자 과세단위로 간주하는 준실체성을 부여함으로써 과세의 객관성과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다.

따라서 수익권의 준물권화를 통해 확보된 법적 토대와 경제적 소유자 개념을 통해 도출된 신탁의 실체성은 재산권의 직접적인 이전 없이도 자산 승계를 가능케 하는 간접승계형 과세모델의 핵심적인 기틀이 된다.

본 연구가 제안하는(또는 제언하는) 이러한 법리적 전환은 현행법의 과세공백과 불확실성을 해소함은 물론, 고령화 사회의 효율적 자산 승계와 사회적 약자 보호라는 신탁 고유의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 **주제어** : 수익권의 준물권성, 경제적 소유자, 준실체성, 불투명신탁, 철회불능신탁

I. 들어가는 말

상증세법상 신탁은 전통적으로 위탁자가 신탁을 통하여 수익자에게 재산을 이전하고, 그 이익을 수익자에게 귀속시키는 직접승계형 재산이전 모델로 이해되고 있다. 그러나 현대 신탁은 단순한 자산 승계를 넘어 자산관리 및 보호, 가업승계, 상업적 금융 거래, 그리고 고령자나 미성년자 등 취약계층을 위한 장기적 복지 수단으로 그 활용 범위가 비약적으로 확장되고 있다.¹⁾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따라 신탁존속기간 중 수탁자 역할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신탁제도는 여전히 수탁자를 단순한 보관자로 보는 한계를 지닌다. 신탁법상 선관주의·충실의무 등 수탁자의 책임은 강화되었으나, 세법상 지위는 여전히 보관자 수준에 머물러 있는 이러한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신탁을 승계와 관리가 결합된 장기적 재산 구조로 전환하고, 수탁자의 실질적 역할을 강화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러한 전환의 시작점은 세법상 수익권의 법적 성격을 재조정하는 것이다. 이는 수익자의 경제적 이익을 법적으로 보호하고 신탁재산의 독립성을 확보하며, 나아가 신탁에 제한적 실체를 부여하기 위한 필수적 과정이다. 신탁법 제2조에서 도출되는 수익권의 준물권성(quasi-property right)과 동법 제22조의 신탁재산의 독립성 원칙은 수익권을 준물권으로 해석할 수 있는 법리적 근거를 제공한다.²⁾ 수익권의 준물권성은 단순히 수탁자에게 이행을

1) 브라보 마이 라이프, “신탁제도 잘 활용하면, 무덤서도 재산 관리 가능케 해”, 2025. 2. 19., https://bravo.etoday.co.kr/view/atc_view/16045(검색일 : 2025. 6. 2.).

2) 현행 신탁법 제2조는 재산권이전과 대세효적 효력, 신탁재산의 독립성(구별관리의 무), 수익자라는 제3자의 권리를 채권적 권리가 아닌 신탁재산 자체에 결합된 물권

청구하는 채권적 권리를 넘어, 특정 신탁재산에 직접 결부(property-linked)되어 그 가치를 배타적으로 향유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³⁾ 즉 수익권은 재산 자체를 지배하는 물권은 아니지만, 재산을 독립된 자산의 집합체로 파악하여 이를 물권적 성격의 권리로 보아야 한다. 이러한 기능적 실체성을 인정한다면, 신탁에 사법상 인격을 부여하지 않더라도, 세법상 독립된 과세 단위로 취급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나 신탁법상 이러한 해석적 기능성에도 불구하고, 세법은 여전히 수익권을 단순 채권으로 파악하여 도관이론(conduit theory)에 입각한 수익자와 세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은 신탁의 실질적인 경제적 가치를 반영하지 못해 과세 왜곡을 초래한다. 특히 신탁재산 결부성을 부정하고 이를 수익자의 개별 자산으로 파악할 경우, 다수의 수익자가 존재하거나 수익권이 파편화된 구조에서는 이중과세나 과세누락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신탁재산의 가치 변동이 수익권의 가치에 즉각적으로 반영되지 않는 평가상의 괴리는 과세형평성을 저해하며, 제3자에 대한 대항력 약화로 인해 진정한 경제적 소유자를 포착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신탁을 단순한 도관이 아닌 특정목적에 구속된 독립된 자산 실체로 인정함으로써, 가업승계와 복수신탁 등 현대적 신탁 흐름에 부응하는 과세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또한 세법상 수익권의 준물권성은 신탁의 이원적 소유권 분리에서 발생

에 준하는 권리로 해석할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또한 신탁법 제22조에 신탁재산을 수탁자의 고유재산과 분리한다고 규정하여 위탁자의 채권자나 수탁자의 채권자로부터 강제집행이 금지된다고 규정하여 신탁재산의 독립성을 명확히 하고 있다.

- 3) 신탁재산의 결부성 정의는 우리나라에서 찾아 볼 수 없어서 미국의 신탁재산의 결부성을 참고한다. 미국의 신탁재산의 결부성은 수익권은 단순히 수탁자의 일반 자산에 대한 권리가 아니라, 신탁으로 설정된 특정 자산에 직접 연결된 권리를 의미한다 [Restatement (Third) of Trusts § 2]. 이는 특정 재산에 수익권이 고착될뿐만 아니라 수탁자가 이를 부당하게 처분했을 때, 그 대가물을 추적할 수 있는 기능을 한다. 이는 Knatchbull v. Hallett (1880) 등에 의하여 정립된 법리로써, 신탁재산이 다른 자산과 혼합되거나 형태가 바뀌더라도 수익자는 그 결부성을 근거로 자산의 몫을 특정하여 회수할 수 있다.

하는 수익권의 법적 불안정성을 보완하는 장치가 된다. 수익권이 신탁재산과 결부될 때 자산의 가치 변동을 수익권 가치에 즉각 반영할 수 있으며, 이는 과세당국이 실질적인 자산 가치를 포착하고 수익권 자체를 압류하거나 공매함으로써 조세 채무의 일실을 방지할 수 있다. 특히 위탁자의 지배력이 상실되거나 수익자가 불확정된 조건부 승계신탁의 경우, 신탁 자체를 세법상 하나의 과세단위로 파악함으로써 과세공백 및 과세 시기나 납세의 무자 불확정 문제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⁴⁾ 이는 과세 원천을 명확히 특정하고 모호한 소유자 판별 문제를 해소하여, 신탁을 통한 조세회피를 방지하는 실질과세의 핵심 장치로 활용할 수 있다. 다만, 신탁에게 실체성을 부여한다는 의미는 사법상 인격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조세 부과 과정에서만 인정되는 기능적 과세단위로서의 준실체성(quasi-entity)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결국 신탁의 준실체성을 통해 신탁 자체가 보유 기간 중 발생한 소득의 납세의무자가 되고, 수익권 배분 시점에서 이를 정산하는 구조를 갖추는 것은 간접승계방식 도입을 위한 중요한 요소이다. 간접승계방식은 위탁자의 지배력 상실이나 조건부 승계 상황에서 과세 공백을 방지하는 이점이 있다.

본 논문은 현행 신탁법상 수익권 규정을 기반으로 국제기본법, 상속세법 및 소득세법상 신탁의 과세단위를 명문화할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신탁의 자산 승계 기능을 활성화하고, 현대적 자산관리 구조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4) ESA LAW, "IS A Trust A Legal Entity? If NOT, WHAT IS IT?", Jan 17, 2024., <https://esapllc.com/is-a-trust-a-legal-entity-2024/>(검색일 : 2025. 5. 10.).

Ⅱ. 우리나라 신탁수익권의 성격 및 경제적 실질의 한계

1. 개 요

조세법상 수익권의 채권설 기반이 초래하는 한계는 특히 상속 및 증여 계획에 활용되는 유언대용신탁 및 수익자연속신탁의 과세 문제에서 가장 명확하게 드러난다. 구체적으로 수익권을 채권으로 파악할 경우, 과세당국은 수익권을 물건처럼 평가하기 어려워 임의적인 보충적 평가방법을 사용함으로써, 실제 재산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기 어렵다. 또한 수익자연속신탁처럼 과세시기와 납세의무자의 확정문제도 발생한다. 즉, 수익권에 대한 과세시기를 신탁설정시점으로 할지 아니면 상속 시점마다 과세할지의 문제이다. 더불어 신탁재산의 독립성과 소유권 분리의 충돌 문제이다. 즉, 취득세와 관련하여 물건의 취득인지 권리(채권)의 취득인지를 구별하기 모호하다.⁵⁾

민사법은 물권법정주의⁶⁾에 따라 수익권을 수탁자에 대한 이행 청구 채권으로 해석하며, 준물권적 성격을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채권적 해석은 세법상 실질과세 원칙⁷⁾을 적용할 때, 특히 무상이전인 상속 및 증여세 분야에서 한계점을 드러낸다. 또한 세법에서 수익권을 일부⁸⁾를

5) 대법원 2025. 9. 25. 선고 2025두33790 판결. 즉 수익권을 분배할 때, 매각대금으로 수익권을 분배한 경우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만약 이를 준물권성에 의하면, 분배방식이 부동산이든 매각대금이든과 관계없이 물건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함으로써, 분배형태에 따른 조세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6) 민법 제185조.

7) 국세기본법 제14조.

8)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6호.

제외하고는 과세대상으로 명시하지 않으며, 민사법도 이를 해석의 범위에 머물러 있어, 신탁의 경제적 실질에 부합하는 과세체계를 정립하는 데 한계가 존재한다.

2. 우리나라 신탁법상 수익권의 성격과 한계

가. 현행 신탁법상 수익권의 성격

신탁법 제2조에서 “신탁이란 신탁을 설정하는 자(이하 ‘위탁자’라 한다)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 간의 신뢰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특정한 재산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설정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수익자의 이익 또는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그 밖에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이는 신탁법상 수익권이 특정한 재산과 결부되어 있는 경우, 단순한 채권이 아닌 물권과 유사한 권리로 파악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한다. 이 규정은 신탁법 제22조의 신탁재산의 독립성, 대세적 효력, 수탁자의 위반행위에 대한 수익자의 추급력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수익권이 특정재산에 대한 지배력을 간접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준물권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따라서 현행 신탁법상 수익권은 채권설에 기반을 두되, 실질적으로는 특정 목적물과 결부된 준물권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나. 수익권의 법적 한계

신탁법상 수익권을 준물권으로 인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법상 일물일권주의 하에서는 소유권 자체를 분할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는 신탁재산의 결부성이 존재할지라도 수탁자의 소유권행사를 제한하거나 감시하는 기능을 수행할 뿐, 영미법상 형평법상 이익(equitable title)과 같은 소유권

의 실질적 분할을 의미하지 않는다.⁹⁾ 결국 수익권에 대한 지배력은 신탁 내부관계에서 수익의 향유로 한정되며, 이를 대외적 경제적 소유권과 동일시하는 것은 현행 민법상 물권 체계와 충돌하는 근본적인 한계를 지니고 있다.

3. 세법상 ‘경제적 실질’의 해석적 한계

우리나라 세법 역시 국세기본법 제14조의 실질과세의 원칙을 통해 경제적 실질을 추구하지만, 이는 미국처럼 ‘수익권 지배 = 경제적 소유’라는 공식으로 곧바로 연결되지는 않는다.¹⁰⁾

첫째, 우리나라는 과세 대상인 소득의 귀속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즉,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 의한 ‘사실상 귀속되는 자’는 해당 소득에 대한 지배·관리권을 가지는 자를 의미한다. 둘째, 세법은 수익권 자체를 물권(혹은 준물권)으로 파악하기 보다는 수익권을 통해 소득을 얻는 행위의 경제적 실질을 파악하는 도구로만 활용하고 있다.

한편, 현행 소득과세는 물건이 아닌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파악함으로써, 취득세나 재산세와 달리 소유자보다는 소득의 실질적 향유자를 찾는데 집중한다. 이러한 구조 하에 수익권은 소유권으로 인식되지 못하고 단순한 소득 귀속의 통로로만 가능하게 된다.

9) 최수정, 『신탁법』, 박영사, 2016, 118면.

10)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70460 판결.

4. 개별세법상 한계와 문제점

가. 상증세법

(1) 유언대용신탁의 과세 문제

유언대용신탁은 위탁자 사망 시 수익권을 승계할 수익자를 지정하여, 위탁자의 유산이 유언의 효력과 유사하게 승계되도록 하는 신탁이다.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은 논쟁이 있다.¹¹⁾

첫째, 사인증여로 파악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이다. 신탁계약은 위탁자와 생전 계약이며, 수익자의 지위는 위탁자의 사망이라는 조건에 따라 확정된다. 즉, 위탁자 사망 시점에 수익권이 확정되는 것이므로, 사망을 해제조건 또는 정지조건으로 하는 사인증여와 유사하다고 보아 증여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민법 제562조가 사인증여와 관련하여 유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지만, 형식적으로는 계약에 해당하므로 이를 증여세의 틀 안에서 파악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유산의 이전으로 파악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이다. 이는 유언대용신탁의 실질적 기능이 사후 재산의 분배에 있고, 위탁자가 사망 시까지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통제권을 보유한다는 점에 근거이다. 수익권의 실질적 가치는 위탁자 사망으로 인해 유산의 형태로 이전되므로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이 경제적 실질에 부합한다는 주장이 우세하다.

(2) 수익자연속신탁의 과세 문제

수익자연속신탁은 제1수익자 사망 후 제2수익자, 그 후 제3수익자로 수익

11) 이천오, “신탁 관련 상속세 및 증여세의 현황과 개편 방안”, 『세무와 회계 연구』 제 9권 제3호, 한국조세연구소, 2021, 12~17면.

권이 순차적으로 이전되도록 설계된 신탁이다. 이는 ‘새로운 수익권’이라는 채권이 발생한다고 해석할 경우, 신탁재산의 실체는 하나이지만, 승계 시점마다 독립적인 증여세 문제가 반복되어 이중과세 논란이 발생한다.¹²⁾

나. 부가가치세법의 한계

종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를 누구로 볼 것인가에 대한 논쟁이 지속되어 왔다.¹³⁾ 현행 대법원 판례는 부가가치세가 거래세라는 특성에 주목하여 계약 당사자이자 법률상 소유권을 이전하는 주체인 수탁자를 재화의 공급자로 확정함으로써, 기존 논쟁에 따른 법적 혼란을 해소했다.¹⁴⁾ 하지만, 이는 다음과 같은 비판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결정은 부가가치세 실무상 혼란을 방지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¹⁵⁾ 이 결정처럼 수탁자를 납세의무자로 볼 경우, 재화 흐름의 단절, 신탁계약상 부동산의 처분계약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가 달라진다는 실무상 문제점, 실무상 이중회계처리의 문제점, 다른 담보와 달리 담보신탁에서만 부가가치세를 일반채권자보다 우선 징수하는 불평등이다. 즉, 경제적 실질과의 괴리가 발생한다. 신탁재산의 처분으로 인한 최종적인 이익은 위탁자 또는 수익자에게 귀속된다. 부가가치세 역시 그 이익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경제적 실질에 따라 이익의 귀속 주체인 위탁자나 수익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 또한 다른 세법과의 불일치가 발생하게 된다. 즉, 소득세법이나 법인세법 등 다른 세법에서는 신탁재산의 소득 귀속 주체를 위탁자나 수익자로 보고 과세하는 경우가 많다. 부가가치세만 수탁자를 납세의무자로 보게 되면, 세법 체계

12) 이전오, 앞의 논문, 17~28면.

13) 이전오, “부동산신탁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에 관한 연구”, 『성균관법학』 제27권 제2호,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소, 2015, 338~394면.

14) 대법원 2017. 5. 18. 선고 2012두22485 전원합의체 판결.

15) 배영석·김병일, “수탁자를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로 하는 신탁세제 논리의 문제점에 관한 연구”, 『세무와 회계 연구』 제13권 제2호, 한국조세연구소, 2024, 129면.

전체의 일관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문제가 지적된다.

또한 현행 판례는 신탁의 본질을 간과한 채, 담보신탁이라는 특수한 유형에서 형성된 논리를 일반 신탁까지 확장하여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결정에 대한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¹⁶⁾ 판례에서 논거로 제시하고 있는 신탁법 제22조는 신탁재산의 독립성을 선언하는 의미일 뿐, 납세의무자를 판단하는 직접적인 근거가 될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관점은 수탁자의 매입세액 공제를 불허한 반면 수탁자에게 납세의무만을 부여하는 모순적인 구조를 담고 있다. 이는 경제적 소유자는 수익자 또는 위탁자이지만, 채권설에 의해 거래 당사자가 수탁자이며, 신탁재산의 소유권도 수탁자에게 귀속되며, 위탁자의 지배력이 상실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사법과 세법 모두 수익권을 채권으로 인식하는 한, 거래의 외관에 초점을 두게 되어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탁자나 수익자의 지위를 배제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반면, 수익권의 준물권성에 의하면, 위탁자의 지배력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 즉 경제적 소유자는 수익자로, 수익자 자신이 신탁재산에 대한 통제권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수익자를 하나의 과세단위로 볼 수 있으며, 부가가치세법상 실질적인 재화나 용역의 사업자로 되는 것이다. 이는 형식적 소유자인 수탁자의 역할을 한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다. 취득세 및 재산세 등

취득세와 재산세는 물권(재산) 자체를 과세대상으로 삼지만, 신탁이나 리스 거래에서 경제적 소유자에게 준물권적 지위를 부여하지 않으면, 법적 명의자(수탁자, 리스 제공자)만이 납세의무자가 된다. 이는 실질적으로 부동산을 사용하고 이익을 얻으며 감가상각의 위험을 부담하는 경제적 소유자(수익자, 리스 이용자)에게 과세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한다.

16)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6두18348 판결 (공2008하, 1071).

라. 소 결

현행 신탁법은 수익권을 준물권적 성격으로 파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지만, 세법은 수익권을 채권설에 기초한 소득 귀속의 통로로만 이해하고 있다. 수익권의 준물권성을 세법이 적극적으로 수용하면, 실질과세의 법리는 명확해 질 것이다. 즉, 수익권의 준물권성을 토대로 경제적 소유자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실질과세원칙의 추상적 의미를 구체화하고, 신탁세제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Ⅲ. 주요국의 신탁을 통한 간접승계방식

1. 미국의 신탁을 통한 간접승계방식

가. 개 요

미국의 신탁은 신탁재산에 관한 신임관계(fiduciary relationship)를 말하며, 신임관계에 의하여 신탁재산의 소유권을 갖는 수탁자는 수익자의 이익을 위하여 신탁재산을 취급해야 하는 형평법¹⁷⁾상의 의무를 부담한다고 정의하고 있다.¹⁸⁾ 즉, “미국의 신탁법은 채권과 물권의 대륙법적 이분론에 기초하

17) 형평법의 특징 중 하나는 보통법이 물권에 해당하는 권리를 “권리들의 다발(bundle of rights)”로 받아들여서, 이를 2 이상의 사람들에게 분리하여 귀속시키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 Sarah Worthington, *Equity*, 2nd ed, Oxford University Press, 2006, p.9. 즉 권리들의 다발에는 점유권, 사용권, 수익권, 관리권, 원본권(rights of capital) 등이 있으며, 각 권리를 분속받은 자는 소유자(owner)에 해당한다. 보통법에서도 “권리들의 다발”의 개념을 인정하고 있다.

18) Restatement (Third) of Trusts §2(2003) ; “A trust divides ownership between the

지 않으며, 법적 소유권(legal title)과 형평법상 권리(equitable title)의 이원구조에 따른 이중 소유(two-title system)를 전제로 한다. 따라서 수익권은 채권적 권리(claim)가 아니라 형평법상 소유적 권리로 이해된다. 그러나 수익권의 구체적인 법적 성격에 대한 논의와 더불어, 수익자가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이 제한적이므로, 이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수탁자를 통하여야 하는 등의 현실적인 제약 때문에 준물권적 기능이라는 측면이 부각된다. 이러한 수익권의 준물권적 기능은 신탁재산의 추적(tracing, 결부성), 제한적인 제3자에 대한 대항력, 세무목적상 재산가치 인정이라는 근거를 들고 있다.¹⁹⁾

미국은 사법상 신탁을 법인격 있는 실체로 일반적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지만, 세무 목적상 신탁을 독립된 과세단위인 준실체(quasi-entity)로 취급하는 경우가 있다. 신탁은 위탁자(grantor, settlor)의 지배력(예 : 철회권) 유무를 기준으로 위탁자 신탁(grantor trust) 또는 비위탁자 신탁(non-grantor trust)으로 구분되며, 이는 각각 철회가능신탁(revocable trust) 또는 철회불능신탁(irrevocable trust)과 밀접하게 연관된다.²⁰⁾

한편, 미국 신탁세제는 신탁 소득의 최종 귀속자를 과세대상으로 보고, 경제적 실질에 따라 소득 귀속자를 식별하여 과세하는 투시(look-through)과 세방식을 기본 원칙으로 한다. 이는 경제적 실질 원칙의 구체적 표현으로서, 법적 명의를 아닌 경제적 실질에 따라 과세 주체를 식별하는 원칙을 의미한다. 다만, 경제적 소유자 테스트를 거쳐 최종 귀속자를 확인할 수 없거나, 소득이 신탁 내에 유보되어 위탁자나 수익자에게 투과되지 않는 비위탁자신탁의 경우 과세 공백이 발생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신탁을 하나의 과세단위인 준실체로 인정하고 있다. 이에 대한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trustee, who holds the legal title, and the beneficiary, who holds the equitable title.”

19) JEFFREY A. COOPER, EMPTY PROMISES : SETTLOR'S INTENT, THE UNIFORM TRUST CODE, AND THE FUTURE OF TRUST INVESTMENT LAW, *BOSTON UNIVERSITY LAW REVIEW* Vol. 88 No. 5, Boston University School of Law, 2008, pp.1167~1168.

20) IRC § 671 et and §641 et.

위하여 일정한 경우 수탁자에게 신탁의 납세의무를 부여하고 있다.²¹⁾ 이의 대표적인 형태가 철회불능신탁에 해당하며, 이러한 수탁자의 납세의무 부여는 신탁의 수익자가 불확정되거나 조건부 수익권 분배되는 경우, 세대생략이전과세(Generation-Skipping Transfer Tax, GSTT) 등 간접 승계 시에도 세금 징수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과세 공백을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²²⁾

나. 미국의 수익권의 성격

(1) 채권설

미국 수익권의 성격은 채권설을 원칙으로 한다. 즉 수익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신탁재산에 대한 이행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는 수익자가 신탁재산에 대한 물권적 지위를 갖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 신탁법 제42조²³⁾에서도 수익자는 신탁재산에 대한 수익권을 갖지만, 이 수익권은 수탁자를 상대로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수익권은 특정 재산의 운용성과 직접적으로 결부되어 있으며, 신탁재산에서 발생하는 과실·이익이 수익자의 권리 내용이다. 이러한 수익권의 채권적 성격은 수익자가 신탁재산에 대하여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행사할 수 없는 문제를 야기한다.²⁴⁾ 따라서 수익자가 이를 행사하려면 수탁자를 통해서만 가능하게 된다. 또한 채권설에 의하면 경제적 소유자는 수익자이지만, 과세

21) IRC § 641(a)(신탁을 과세대상으로 규정) and Treasury Regulations § 1.641(b)-2 (수탁자의 납세의무).

22) IRC § 2601(Generation-Skipping Transfer Tax, GSTT) 및 신탁 소득의 복잡한 분배 조건에 따른 IRC §§ 641~668(Subchapter J) 참조.

23) Restatement (Third) of Trusts § 42 (2003). 다만, 수익자가 신탁재산에 대한 권리를 갖지만 이는 수탁자에 대한 청구권이며, 수익자가 직접 신탁재산을 소유하거나 물권처럼 대항력을 갖는 것은 아니라고 보는 것이 통상적 해석이다.

24) John H. Langbein, *The Contractarian Basis of the Law of Trusts*, *Yale Law Journal* Vol. 105 No. 3, Yale Law School, 1995, pp.643~647 ; G. Bogert and G. Bogert, *The Law of Trusts and Trustees* 2d ed., § 871, West Publishing Company, 2020, pp.3~4.

당국은 수익권을 단순한 청구권으로 보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수익자와 수탁자를 모두 납세의무자로 과세하는 이중과세문제도 발생하게 될 것이다.²⁵⁾

(2) 준물권적 기능설

준물권적 기능설은 수익권을 단순한 채권이 아니라 특정 재산과 결부된 물권적 성질이 있다고 보는 견해이다. 이 견해의 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신탁재산의 결부성 등이다. 수익자는 수탁자가 재산을 처분했을 때, 이를 추적(tracing)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다.²⁶⁾ 둘째, 선의의 취득자 이외에 제3자에 대한 대세효(대항력)가 인정된다. 셋째, 미국 연방세법(IRC)은 수익권을 상속 및 증여의 실질적 과세대상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실질적 귀속자는 수익자로 보고 있다.²⁷⁾

다. 미국 경제적 실질 원칙과 경제적 소유자 요건

(1) 미국 경제적 실질원칙

미국의 실질우선주의(substance over form doctrine)는 형식적 거래보다 경제적 내용에 따라 과세하는 원칙이다. 이는 “거래가 조세효과만을 위해 존재하고 독립된 경제적 목적이나 실질이 없다면, 그 세제상 효력을 부인한다.”는 원칙으로 Gregory v. Helvering 사건의 대법원 판결²⁸⁾에서 비롯되었다.²⁹⁾

25) IRC §§ 652~662.

26) Frederick R. Franke, Jr, *TRUST LITIGATION The Enforcement of Beneficiary Rights*, Maryland State Bar Association, November 4, 2011, p.10.

27) Boris I. Bittker and Lawrence Lokken, *Federal Taxation of Income, Estates and Gifts* 4th ed. Vol. 1, Thomson, 2007, pp.1-13~1-15.

28) Gregory v. Helvering, 293 US 465 (1935).

29) 미국은 신탁을 단순한 재산을 보관하는 위탁자신탁에서 적극적인 사업 활동을 수행하거나 자금을 모아 투자하는 사업신탁(business trust)을 실체로 보고 있다. 이 사업신탁은 Morrissey v. Commissioner의 판례를 통하여 설정되었다. 이 판결에서는 신

이 원칙에 따라 거래의 실질과 사업 목적 유무 여부 등을 검토하여 법률적 형태를 무시하거나 재분류할 수 있다.³⁰⁾

여기서 경제적 실질 또는 귀속(economic accrual or economic substance attribution)은 법 형식이나 명의를 아니라 거래의 경제적 결과, 위험부담의 이전(거래상 대방이 손실 또는 불확실성 위험을 부담하는지 여부),³¹⁾ 위험 부담 및 이익 흐름의 귀속(실제 현금 유입 또는 이익 분배의 귀속),³²⁾ 의사결정권 및 통제(실질적인 경영이나 관리의 주체 여부), 경제적 변화의 유의미성(조세효과를 제외하고도 경제적 위치의 변동 여부), 사업 목적(세제 혜택 외의 실질적인 목적이 존재 여부).³³⁾ 등을 판례나 규정에서 강조하는 주요 기준으로 한다. 이는 현금 흐름 및 실질적 이해관계 등을 기준으로 소득·이익·비용 등이 어느 주체에게 귀속되는지를 판단하는 개념이다. 이러한 법적 안정성은 2010년 미국 연방세법(IRC) 제7701조(o)를 통해 강화되었다.

(2) 경제적 소유자 요건

미국의 세법상 경제적 소유자(economic owner)³⁴⁾ 또는 실질적 소유자(beneficial owner)³⁵⁾는 법적 명의로 상관없이 자산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이익을 실질적

탁을 법인으로 인정할 수 있는 4가지 조건을 제시했다. 즉, ① 연속성(소유자의 사망이나 소유권 이전과 관계없이 실체의 존속 여부), ② 중앙집권적 관리(재산을 관리하고 사업 결정을 내리는 권한이 소수의 인원(수탁자 등)에게 집중되어 있는지 여부), ③ 책임의 제한(소유자(수익자)의 책임이 투자액으로 제한되는지 여부), ④ 지분의 자유로운 이전(소유 지분을 다른 사람에게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는지 여부 : 수익증권발행신탁)이다.

30) United States Senate Committee on Finance, “ECONOMIC SUBSTANCE DOCTRINE”, <https://www.finance.senate.gov/imo/media/doc/Leg%20110%20100407agament.pdf>(검색일 : 2025. 10. 10.).

31) IRC § 7701(o)(2).

32) IRC § 7701(o)(2).

33) Treas. Reg. § 1.368-1(b) and (c).

34) Frank Lyon Co. v. United States, 435 U.S. 561 (1978).

35) Treas. Reg. § 1.1441-1(c)(6).

으로 향유하는 자를 의미한다.³⁶⁾ 미국의 경제적 소유자 개념은 법적 명 의와 관계없이 자산의 수익 흐름을 지배하고 배타적으로 향유하는 기능에 기초 한다. 따라서 경제적 소유자는 수익권을 지배하게 되고, 법적 명의자가 파 산하거나 제3자에게 자산을 이전하더라도, 실질적인 위험과 수익을 계속 부 담하게 된다.³⁷⁾ 이는 마치 물건처럼 특정 자산의 효용에 직접 연결된 강력하 고 안정적인 권리를 부여한다는 점에서 준물권적 기능과 경제적 실질 측면 에서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경제적 소유자 요건은 다음과 같다. 경제적 위험의 부담, 관리 및 통제 권,³⁸⁾ 수익의 귀속,³⁹⁾ 환수·처분 권한, 법적 형식과의 괴리 여부이다.⁴⁰⁾ 이 요건들은 자산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 사용료 처분이익 등을 배타적으로 향 유하는 수익권의 지배력 여부, 자산가치의 하락·손상·노후화 등의 경제 적 손실위험을 최종적으로 부담하는지 여부, 자산의 사용·관리·처분 시 점에 대하여 실질적인 통제력을 행사하는지 여부로 판단된다. 즉, 자산의 사용·관리·처분에 대한 실질적 통제인 ‘지배 및 통제권’과 자산가치 변동 에 따른 손실 위험 부담 및 소득의 배타적 향유인 ‘위험과 수익의 귀속’이 주요한 요건에 해당한다.

36) 미국 세법상 실질적 소유자(beneficial owner) 개념은 자산에 대한 지배와 통제를 강 조한 *Helvering v. Clifford*, 309 U.S. 331 (1940) 판결 및 거래의 경제적 실질을 강조 한 *Frank Lyon Co. v. United States*, 435 U.S. 561 (1978) 판결 등을 통해 정립되었으 며, 현행 연방세법(IRC) 및 재무부 규칙(Treas. Reg. § 1.1441-1 등)에서 구체화되어 있다.

37) U.S. Bankruptcy Code § 541(d)에 따르면, 채무자가 자산에 대해 법적 명의(legal title)만 가지고 실질적 이익(equitable interest)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 해당 실질적 이익은 파산재단에 포함되지 않는다. 즉, 명의자의 파산 시 자산이 파산재단에 귀 속되지 않도록 분리하거나, 반대로 명의와 무관하게 실질 소유자에게 과세하는 근 거로 활용된다.

38) *Helvering v. Clifford*, 309 U.S. 331 (1940).

39) *Commissioner v. Sunnen*, 333 U.S. 591 (1948).

40) *Aiken Industries, Inc. v. Commissioner*, 56 T.C. 925 (1971).

라. 미국의 간접승계방식

미국의 간접승계방식이 출현된 배경은 신탁의 이중적 소유구조로 인하여 소득 유보시 납세주체 판단이 어려운 점을 해결하고, 부유층의 세대생략이전을 통한 유산세 조세회피를 방지하지 위한 것이다. 이는 위탁자의 통제력이 없는 철회불능신탁에서 소득의 귀속자를 바로 특정할 수 없을 때, 신탁 자체를 독립된 과세단위인 준실체로 인정함으로써 과세공백을 차단할 수 있었다.⁴¹⁾

이러한 간접승계방식은 다음과 같은 과세상 효과가 존재한다. 첫째, 과세공백 해소 및 통제권 강화,⁴²⁾ 둘째, 경제적 실질에 따른 귀속확정,⁴³⁾ 셋째, 세대생략이전세 부과를 통한 세대 간 과세형평성 확보⁴⁴⁾가 가능하게 되었다.

마. 소 결

미국은 수익권의 사법상 성격과 세법상 준물권적 기능을 조화시켜 경제적 소유자 개념을 정교하게 설계했다. 즉 미국은 수익권을 사법상 채권을 원칙으로 하지만 형평법상 권리로 인정하여, 신탁재산의 결부성, 수익자의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의 제한적인 허용, 과세상 재산 가치를 고려한 수익권의 준물권적 기능을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준물권적 기능은 신탁재산의 소유권을 명확히 함으로써, 경제적 소유자 파악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기초가 되었다. 이러한 수익권의 준물권적 기능은 경제적 소유자 개념의 토대

41) IRC § 641 and IRC § 7701(a)(30).

42) IRC §§ 641~668. 비위탁자신탁을 별도의 세무상 실체로 취급하며, 유보소득에 대해 신탁 자체가 세율을 적용받도록 했다.

43) *Helvering v. Clifford*, 309 U.S. 331 (1940). 신탁의 형식적 이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 지배권이 위탁자에 남아 있는 경우 위탁자를 소유로 판단하는 실질우선주의가 적용되어야 한다.

44) IRC §§ 2601~2663에서 세대생략이전세를 명문화하여 세대 간 과세형평을 도모하고 있다.

가 되었고, 이는 미국 세법에서 경제적 실질에 대한 정교한 설계가 가능하도록 하는 동력이 되었다. 또한 미국은 신탁의 경제적 소유자 파악이 가능하도록 제도화함으로써 다양한 신탁의 출현이 가능해졌고, 이는 직접승계 뿐만 아니라 신탁을 통한 간접승계방식을 통한 운영방식을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경제적 소유자 개념은 신탁처럼 이중적 소유구조에서 발생하는 세법상 해석 오류 및 과세공백을 방지하는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신탁제도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존재한다. 이는 법률적 접근이 아닌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한 접근으로 신탁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국가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상당하다고 본다. 또한 미국의 입법례는 우리나라에서도 실무상 논란거리인 상속세법상 유언대용신탁이나 수익자연속신탁의 과세시기 또는 납세의무자 등의 과세 문제를 해결하고, 부가가치세법상 수탁자 납세의무 논란을 보완하는데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것이다.

2. 독일의 신탁을 통한 간접승계제도

가. 개 요

독일은 독자적인 신탁법이 존재하지 않으며, 신탁행위(Treuhand)는 위임계약(Auftrag)의 일종인 사무처리계약⁴⁵⁾을 기초로 한 계약형 신탁유사제도(Vertragsähnliche Treuhandschaft)로 운영되어 왔다. 신탁행위는 수탁자가 대외적인 완전한 소유 명의를 취득하지만, 위탁자와의 내부에서는 재산을 위탁자의 이익을 위해 관리하는 의무를 부담한다. 하지만 이는 헤이그 신탁협약 제2조가 요구하는 신탁재산의 소유권 분리 구조를 충족하지 못해 명문상 신탁재산의 독립성이 부정되는 한계가 있다. 즉 수탁자의 고유재산과 신탁재산의 분리를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하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5) 독일 민법 제675조.

독일 법원(연방대법원, BGH)은 강제집행·파산 단계에서 위탁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함으로써, 신탁행위가 실질적으로 신탁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보장하고 있다.⁴⁶⁾

그러나 이러한 명목과 경제적 지배의 불일치 구조는 기업승계·자산보호·역외신탁 등 장기적 자산 관리 상황에서 경제적 귀속자를 특정하기 어렵게 만들어 과세공백(steuerliches Zurechnungsvakuum)을 초래했다. 이는 단순 채권적 이해관계만으로는 신탁재산의 귀속을 설명하거나 과세단위를 설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다.⁴⁷⁾

독일은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실체의 판단 기준을 계약 형식이 아니라 수익권의 실질적 내용과 경제적 지배의 귀속에 두었다. 이를 위해서 세법상 수익권의 준물권성 개념이 판례와 학설에 의해 형성되었으며, 이는 신탁외부관계에서의 제3자의 침해나 강제집행에 대한 대항력을 인정받아 물권에 준하는 기능이 결합한 형태이다. 이를 기반으로 독일 조세기본법 제39조에서 경제적 귀속 원칙을 명문화하여, 신탁을 투명신탁과 불투명신탁으로 구분하고 신탁을 과세단위로 포착할 수 있는 간접승계 구조의 법리적 토대를 마련했다.

나. 독일 수익권의 성격

신탁법이 독립적으로 제정되어 있지 않은 독일은 주로 판례에 따라 수익권의 성격이 결정되었다. 이에 독일 민법(BGB)은 수익권을 채권으로 파악하고 있지만, 조세법상 신탁구조에서 수익권은 단순한 채권이 아니라 물권적

46) 소재선·이창규, “신탁제도에 관한 연구 — Trust와 Treuhand의 비교를 중심으로 —”, 『원광법학』 제32권 제4호,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 12., 121면; Oliver Arte and Katharina Petri, Business Trusts — der Trust im kommerziellen Umfeld, RECHT, Der Schweizer Treuhänder, 2004, p.513.

47) 김무열, “독일의 부동산신탁 관련 조세제도와 시사점 — 부동산취득세를 중심으로”, 『최신외국법제정보』 제4호, 한국법제연구원, 2016, 14면.

효력이 있는 채권(obligatorisches Recht mit dinglicher Wirkung)으로 보고 있다.⁴⁸⁾ 즉 신탁내부관계는 수탁자(Treuhänder)에 대한 청구권인 채권을 띠지만, 신탁외부관계는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인정받는 준물권적 성격을 지닌다. 이는 수익권이 특정 신탁재산과 결부되어 있음을 의미하고, 독일 조세법원은 준물권성을 세법상 기능적 개념으로 제한하며, 사법상 물권으로의 형식적 권리 변환이 아니라고 판시하고 있다.⁴⁹⁾

하지만, 수익권의 준물권성은 신탁외부에서 신탁재산의 소유권자를 알 수 없는 불투명신탁에서는 그 역할이 약화된다. 수익권이 단순한 기대권 수준에 머물러 경제적 귀속자를 특정할 수 없을 경우,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할 상대방이 존재하지 않게 된다. 이때 독일 세법은 실질 귀속이 불분명할 경우 신탁 자체를 경제적 지배자로 간주⁵⁰⁾하여 수탁자(또는 신탁)를 과세단위로 인정하는 근거로 활용된다.

다. 독일의 경제적 실질의 원칙과 경제적 소유자 요건

(1) 개 요

독일의 경제적 실질원칙은 수익권의 준물권성에 기반하여 독일 조세기본법 제39조(실질과세의 원칙)와 동법 제42조(권리 남용)⁵¹⁾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동법 제39조 제2항은 법적 정의보다 실제 상황에 따른 귀속을 강조하고 있다.⁵²⁾ 실제 상황이란 해당 사건의 운영 방식, 자산의 독립성, 수익 창출 능력, 의사결정 구조, 실제자금의 흐름 및 사용처 등을 의미하며, 이를 통해 숨겨진 경제적 실질을 포착하여 과세대상을 명확히 하고 조세회피를 방지

48) Staudinger, BGB Kommentar, § 929 Rn. 35 ; Larenz, 『Schuldrecht』 Bd. II.

49) BFH, II R 13/19 ; BStBl II 2022, 668.

50) BFH, Urteil vom 25.6.2021 – II R 13/19, BStBl II 2022, 668.

51) 독일 조세기본법 제42조의 조세회피규정과 관련하여 경제적 소유자를 결정할 경우 고려된다.

52) 독일 조세기본법 제39조 제2항.

하는 데 목적이 있다.

(2) 경제적 귀속자 요건

경제적 소유자 요건은 독일 조세기본법 제39조 제2항 제1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즉 “재산은 법적 소유자에게 귀속되지만, 만약 다른 사람이 경제적 관점에서 해당 재산을 소유자처럼 사용할 수 있고, 법적 소유자가 더 이상 해당 재산을 사용할 수 없거나, 경제적 소유자가 합의된 기간 동안 법적 소유자를 배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면, 재산은 경제적 소유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본다.”⁵³⁾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실질적인 처분권 행사(Sachherrschaft)로서, 해당 재산을 자유롭게 처분·사용·관리할 수 있는 실질적인 권한을 의미한다.⁵⁴⁾ 이때 제3자의 배제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② 경제적 가치의 향유 및 부담(Wirtschaftlicher Nutzen)하는 경우로서, 재산에서 발생하는 모든 경제적 이익(수익)을 귀속받고, 동시에 유지비용이나 가치 하락 등의 위험을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⁵⁵⁾ 단순 명의자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위험을 부담하는 자를 경제적 소유자로 본다. ③ 법적 명의자의 실질적 배제 또는 제한(Ausschluss des zivilrechtlichen Eigentümers)으로서, 법적 명의자는 해당 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거나 극히 제한적이어야 한다. ④ 영구적 또는 장기적인 권리 행사(Dauerhaftigkeit)로서, 경제적 소유자의 지위가 일시적이

53) 독일 조세기본법 제39조 제2항 제1호.

54) BFH, I R 182/69 판결 ; BFH는 리스 계약 등에서 법률상 소유권은 리스 제공자에게 있지만, 실질적인 위험(감가상각, 손실 위험 등)과 기회(가치 상승, 사용 이익 등)는 리스 이용자에게 전가되는 경우, 경제적 소유권은 리스 이용자에게 있다고 판단했다. 즉, 리스계약이라는 법적 형식보다는 실질적인 소유권과 위험 및 편익의 부담자를 기준으로 세무 처리를 결정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55) BFH, Ur. v. 02.07.1998-IV R 45/97 ; 이 판례는 공동 주택 건설 프로젝트와 같은 특정 부동산 신탁에서 신탁 재산이 세법상 투명하게 취급되는 경우로써, 신탁회사가 단순히 자금 관리 및 행정 업무를 대행할 뿐, 실질적인 사업의 위험과 이익은 투자자(신탁 설정자 또는 수익자)에게 귀속될 때 투명신탁으로 판단하고 있다.

거나 단기적인 것이 아니라,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주로 인정된다.⁵⁶⁾ ⑤ 거래의 실질적 내용(Wirtschaftlicher Gehalt des Geschäfts)으로서, 형식적인 계약이나 등기가 아닌, 실제 거래의 내용과 목적을 기준으로 경제적 실질을 판단한다.⁵⁷⁾

이러한 독일의 실질과세의 원칙은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경제적 귀속자를 경제적 소유자로 보고 있다는 점은 유사하지만, 경제적 소유자 요건을 우리나라 보다 법리적으로 정교한 체계(배타적 지배력, 위험·이익의 귀속, 장기적 지속성)를 마련하여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라. 독일의 간접승계방식

독일법상의 간접 승계(Indirekte Übertragung)는 법적 소유와 경제적 소유를 분리하여 이루어진다. 독일 민법상 재산권의 이중구조를 인정하지 않으므로, 수탁자가 대외적으로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되 내부적 계약에 의해 경제적 효익을 이전하는 구조를 취한다. 대표적으로 펀드 재산 등이 이에 해당하며,⁵⁸⁾ 신탁재산 이전 시 발생하는 증여세에 대해 수탁자를 납세의무로 하되 위탁자에게 연대납세의무를 부여하여 과세권을 확보하고 있다.⁵⁹⁾

마. 소 결

독일에서 수익권의 준물권화는 형식상 소유와 경제적 소유가 분리되어

56) BFH, Urteil vom 28.11.2000 – VIII R 42/99, BStBl II 2001, 183 ; 본 판결에서 연방 재판소는 경제적 소유자 지위가 단기기간의 점유만으로는 성립하지 않으며, 일정 기간 이상의 지속성이 있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57) BFH, Urteil vom 10.11.1998 – VIII R 6/96, BStBl II 1999, 282.

58) 독일 투자세법 제1조, 제2조 및 제6조 ; 독일 법인세법 제1조 및 제5조 ; 독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조 및 제24조.

59) 독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조 제1항 제8호 및 제20조 제3항 등 참조.

있더라도, 수익권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부여하여 경제적 소유자의 법적 안정성을 보장하는 장치로서 기능한다.

신탁에 실제성을 부여하여 신탁 자체가 과세단위가 되는 상황은 수익권의 준물권적 성격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실질관계가 단절되거나 수익자가 불확정되어 경제적 귀속자를 명확히 파악할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정된다. 즉, 조세회피 행위 등으로 인해 법적 형식과 경제적 실질이 괴리되어 실질과세원칙이 형해화 될 우려가 있는 때, 과세권의 효율적 행사를 위해 불가피하게 신탁재산 또는 신탁 자체를 독립된 과세단위로 간주하게 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독일 세법상 간접승계는 수익권의 준물권성을 통해 수익자의 법적 지위를 보완하는 동시에, 실질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 신탁의 실제성을 부여함으로써, 과세공백을 방지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IV. 신탁의 실제성 부여 및 신탁을 통한 간접승계방식 도입방안

1. 세법상 수익권의 성격 조정 필요성

가. 개 요

현행 신탁법상 수익권은 원칙적으로 채권적 권리이지만, 특정재산과 결부된 경우 물권에 준하는 권리로 이해되고 있다.⁶⁰⁾ 반면 세법은 여전히 수익권을 채권적 관점에서 해석하는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세법상 채권설은 신탁을 명의신탁이나 위임 관계로부터 명확히 구분하고 있지 못하다. 특히 채권설을 따를 경우, 위탁자의 사망·부재나 법인의 해산 시

60) 신탁법 제2조.

수익권의 귀속 주체 및 납세의무의 승계 관계가 불분명해지는 과세상 혼란을 야기한다. 나아가 과세당국이 수익권을 단순 채권으로 파악하게 되면, 수탁자에 대한 채권압류 형식만을 취하게 되어, 신탁재산 자체의 변동에 대한 추급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조세 채권의 집행력이 무력화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세법이 신탁법 제2조의 취지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수익권을 준물권적 권리로 파악한다면, 신탁재산 자체를 하나의 과세단위로 포착할 수 있는 법리적 근거가 마련될 것이다. 이는 결과적으로 과세 시기와 납세의무자의 불확정으로 인한 과세공백을 해소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따라서 미국과 독일이 수익권의 준물권적 기능설을 참조하여 수익권의 법적 성격을 재조정함으로써, 수탁자의 형식적 소유권과 수익자의 경제적 소유권을 분리하여 인식하는 신탁 고유의 이중적 소유구조를 세법에 반영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다만, 세법의 해석만으로 사법상 권리형태를 임의로 변경하는 것은 사법자치 원칙과 법적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조세법률주의에 입각한 신중한 법체계적 검토가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나. 준물권적 기능설의 도입

(1) 신탁재산의 결부성

수익권은 단순한 청구권에 머무르지 않고, 특정 재산과 직접적·배타적 결합관계를 형성한다. 이는 신탁법 제22조에 따른 신탁재산의 독립성과 대외적 대항력은 이미 신탁재산이 일반 채권의 대상을 넘어선 특정성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수익권은 금전채권에 한정되지 않고, 부동산·주식·지식재산권 등 다양한 형태로 대체될 수 있으며, 대체 이후에도 동일한 권리 내용이 유지된다. 이러한 대체성과 결속성은 수익권이 단순한 채권을 넘어 신탁재산에 결부된 독자적 재산권임을 시사한다. 나아가 신탁재산의 결부성은 경제적 소유자 판정의 핵심 기준으로 기능할 수 있다.

(2) 제3자에 대한 대항력

채권의 상대성 원칙에 따르면, 수익자는 신탁재산을 취득한 제3자에게 직접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이러한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신탁재산을 무상 또는 악의로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 수익자의 반환 청구권⁶¹⁾을 강화하여 준물권적인 대세효를 인정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수익권에 대세효를 부여할 경우, 거래상대방이 신탁의 존재를 확인해야 하는 부담이 발생하여 거래 안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준물권화는 수익자 보호에는 유리하지만, 제3자의 법적 지위 및 거래법적 예측가능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어 신중한 제도설계가 필요하다. 이와 같이 거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으나, 공시(등기·등록)된 신탁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대항력을 인정하는 방식은 거래안정성과 수익자 보호를 조화시키는 절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3) 세법상 재산적 가치

세법상 과세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해당 권리가 독립된 재산단위(property unit)로 기능해야 한다. 그러나 단순한 채권은 상황에 따라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거나 평가가 곤란해지는 한계를 가진다. 현행 신탁구조에서 수익권이 채권으로 간주될 경우, 실질적인 과세누락 또는 과세시기 불일치 문제가 발생한다. 예를 들어, 타익신탁의 경우, 위탁자가 신탁을 설정할 때 수익자에게 경제적 실질이 이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과세 시점이 모호하여 과세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⁶²⁾ 준물권설에 의하면, 신탁설정 자체가 간접적인 재산권의 취득으로 간주되어 이러한 과세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현행 세법은 법인세·소득세·양도소득세·상속세·증여세 등에서

61) 신탁법 제75조.

62) 대법원 2024. 4. 16. 선고 2022다307294 판결. 즉 위탁자가 수익자를 자신으로 지정한 것만으로는 새로운 재산권 취득이 없다고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으며, 실익도 없다고 보고 있다.

수익권을 일정 부분 과세대상으로 인정하지만, 신탁법과의 해석상 괴리로 인한 불일치가 존재한다. 예컨대, 상중세법은 수익권을 하나의 과세단위로 보지만, 소득세법은 이를 명시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위탁자나 수익자 중 누가 납세의무자인지를 사안별로 판단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실질과세의 적용범위를 넘어 사법상의 권리형태를 재구성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와 충돌할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수익자 불확정 및 조건부 수익권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적 성격의 명확화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⁶³⁾

다. 소 결

수익권의 성격 조정은 신탁세제의 일관성과 과세공백 방지를 통한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불가피하다. 이를 위한 대안으로 독일의 준물권설과 미국의 준물권적 기능설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 즉, 신탁법 제2조의 채권적 형식을 존중하되 세법 적용에 있어서는 신탁재산의 결부성, 제3자에 대한 대항력 그리고 독립된 재산적 가치를 인정하는 이중적 구조의 도입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다만, 단순한 해석로만으로 사법상 권리의 본질을 재정의하는 것은 사법자치 원칙과 충돌하거나 개별 세목별 해석의 불확실성을 초래하여 과세원칙의 정합성을 훼손할 위험이 있다. 따라서 실질과세원칙을 구체적으로 구현하면서도 조세법률주의에 따른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익권의 성격과 그에 따른 과세 단위를 명확히 하는 입법적 뒷받침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수익권의 준물권화는 신탁재산을 단순한 계약시의 대상이 아닌 독립된 자산 집합체로 파악하고, 수익자가 해당 집합체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법리적 전환은 과세당국이 신탁을 독립된 과세 단위로 설정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 또한 수익권과 신탁

63) 대법원 2017. 5. 18. 선고 2012두22485 전원합의체 판결.

재산의 가치를 등치(等值)시킴으로써 신탁내부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실질 귀속자를 명확히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결국 수익권의 준물권성은 현행 세법상 경제적 실질이라는 추상적 개념을 구체화하고, 신탁법상의 형식과 세법상의 실질을 유기적으로 조화시키는 핵심적인 매개물로 기능할 것이다.

2. 경제적 소유자 개념을 통한 신탁의 실체성 부여 검토

가. 개 요

현행 수익권에 대한 채권설 중심의 접근은 국세기본법 제14조가 지향하는 실질과세원칙을 구현하는데 한계가 있다. 실질과세의 원칙은 소득의 귀속에 관한 실질적 판단을 기초로 하지만, 신탁은 법적 소유와 경제적 소유를 이원화되는 특수한 법적 구조를 지니고 있어, 법적 형식만으로 실질적인 귀속 주체를 판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신탁 관계에서의 단순한 명의대여와 달리, 해당 자산에 대한 통제권의 소재와 위험부담의 실질적인 귀속을 핵심 지표로 삼아야 할 것이다.

또한 현행 실질과세원칙은 선언적 의미에 머물러 있다. 이는 경제적 소유자에 대한 구체적인 요건이 명문화되지 않아 과세당국의 개별적·자의적 판단에 의존함으로써 과세의 불확실성과 이중과세의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수익권을 독립된 과세단위로 인정하고, 추상적인 실질과세원칙을 구체화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이러한 접근은 사법상 권리관계를 직접 변경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실질과세가 작동하는 법적 범위를 명확히 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즉 경제적 소유자 개념은 세법상 소득의 귀속을 판단하는 기능적 기준에 그치며, 사법상 권리를 새롭게 창성하는 법적 근거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할 것이다.

나. 수익권의 준물권성에 기반한 신탁의 실체성 부여

수익권의 준물권성은 특정 재산에 결부되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물권적 성격을 내포하며, 이는 세법상 경제적 지배권을 판단하는 물적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특정 주체가 경제적 소유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자산에 대한 배타적 지배권을 보유해야 한다.⁶⁴⁾ 신탁구조에서 이러한 배타적 지배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신탁재산이 위탁자나 수탁자의 고유 재산과 분리된 별도의 자산 집합체로 인식되어야 한다. 이는 수익권이 준물권성을 갖을 때 비로소 가능해진다. 이러한 준물권성으로 신탁재산에서 창출된 경제적 이익은 수익자에게 귀속되지 않더라도, 해당 자산 실체 내에 고착되는 신탁재산의 결부성을 유지하게 된다.⁶⁵⁾ 결과적으로, 수익권의 준물권성에 근거하면 수익권은 신탁재산 그 자체를 의미하며, 신탁재산은 그 자체로 독립된 조세부담능력을 지닌 자산 실체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수익권의 준물권성은 신탁재산을 경제적으로 분리 독립된 과세단위로 전환시키는 계기가 된다. 이는 신탁재산 자체가 독립된 조세부담능력을 가진 기능적 실체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의미하며, 사법상 인격을 갖추지 않더라도 세법상 독립된 과세단위가 될 수 있다는 의미이다. 다만, 세법상 실질 판단이 사법상 권리형태를 자동적으로 변경시키는 것은 아니므로, 신탁의 실체성 인정은 입법적 근거와의 정합성이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

(1) 경제적 소유자의 요건

미국과 독일은 경제적 실질귀속자를 판정하기 위한 요건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다.

독일은 조세기본법 제39조에 따른 경제적 소유자 요건은 다음과 같다. 첫

64) 독일 조세기본법 제39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법적 소유자가 아닌 경제적 소유자에게 재산을 귀속시키기 위해서는 해당 재산의 배타적 지배권이 전제되어야 한다.

65) *Helvering v. Clifford*, 309 U.S. 331 (1940).

째, 영속성(Permanenz)은 일정 기간 이상 지속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사법상 소유자의 배제가 가능해야 한다. 이는 신탁이나 금융리스 등 장기적 구조를 전제로 하는 관계에서 특히 중요하다.⁶⁶⁾ 둘째, 처분가능성(Verfügungsmacht)은 법적 소유자 여부와 무관하게 사실상 자산을 관리와 처분할 수 있는 실질적 권능이 존재해야 한다.⁶⁷⁾ 셋째, 대체성(Fungibilität)은 해당 자산을 직접 사용·운용하거나 제3자에게 사용을 허락할 수 있는 실질적 운용·지배권이 요구된다.⁶⁸⁾

미국은 *Helvering v. Clifford* 판결⁶⁹⁾의 법리를 수용하여 위탁자 신탁 규칙(grantor trust rules)⁷⁰⁾을 법제화했다. 미국은 독일식 명문화 방식 대신 실질과 세원칙에 기초한 판정테스트를 활용하는데, 주요 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 통제권(retained control)으로 위탁자가 신탁의 운용, 투자, 분배에 대한 권한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한다. 둘째, 위험부담(risk and benefit)으로 자산가치의 증감에 따른 경제적 이익과 위험이 누구에게 귀속되는가를 판단한다. 셋째, 이익향유권(beneficial enjoyment)으로 신탁소득 또는 자본이 실질적으로 누구에게 귀속되어 사용되는지를 판단한다.

이러한 비교법적 검토를 바탕으로, 우리나라도 독일식 3대 요건에 미국식 “통제권·위험부담·이익향유권”요소를 결합하여 경제적 소유자 판정 기준을 명문화함으로써, 국세기본법의 추상성을 극복해야 할 것이다.

66) BFH 2017.12.21, IV R 56/16 ; 독일 조세기본법 제39조 제2항 제1호.

67) BFH 2010.7.20, IX R 38/09.

68) BFH 2021.9.29, I R 40/17.

69) 미국 연방대법원은 “신탁이 형식상 설정되었더라도 위탁자가 그 소득과 재산에 대한 통제력을 유지한다면, 실질적 소유자는 위탁자 자신이다”고 판시하였다. 이 판결은 위탁자의 유보 권한(Grantor Retained Powers)의 정도에 따라 신탁의 소득귀속을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였고, 통제력이 경제적 소유자 판정기준이 되었다.

70) IRC §§ 671~678(grantor trust rules).

(2) 신탁 실체성의 이원적 접근과 한계

신탁의 실체성 인정 범위는 사법과 조세법에서 상이하게 이해되어야 한다. 이는 세법상 과세단위의 확정을 위한 기능적 실체성(functional entity)에 한정되어야 하며, 이를 사법상 법인격 부여로 확장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 즉, 세법상 실체성은 신탁을 과세주체로 파악하기 위한 기술적·도구적 승인에 불과하며, 이를 사법상 권리주체성 부여로 확장하는 데는 무리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독일·미국의 입법례 및 판례는 공통적으로 신탁의 사법상 비법인격성을 유지하면서 세법상 독립된 과세단위로 취급하는 이원적 접근법을 취하고 있다.^{71), 72), 73)} 이는 신탁을 세금계산의 편의와 과세 공백 방지를 위해 계산단위(computation unit)로 취급할 뿐, 사법상 법인격을 부여한 것은 아니다.

(3) 투명성과 경제적 귀속의 분류기준

독일과 미국은 신탁의 투명성 여부(transparency)를 기준으로 경제적 귀속자를 구분하고 있다. 독일은 위탁자·수탁자 관계가 외부에서 명확히 확인될 수 있는 경우 위탁자나 수익자를 실질적 소유자로 본다(투명신탁). 반면, 이러한 관계가 불명확한 경우 수탁자를 실질적 소유자로 간주한다(불투명신탁). 미국은 세법상 신탁의 투명성은 위탁자의 통제력(retained control)을 기준으로 구분되며, 위탁자의 통제력이 남아 있는 경우 위탁자신탁(grantor trust)으로 보며, 통제력이 상실된 경우 철회불능신탁 또는 비위탁자신탁(non-grantor trust)으로 본다.⁷⁴⁾

71) BGH 1999. 3. 18., IX ZR 377/98.

72) Restatement (Third) of Trusts § 2.

73) IRC § 641(b). 신탁에 법인격을 부여하지 않으면서도, 소득세 체계에서 신탁을 “trust as a separate taxable entity”로 규정하고 있다.

74) IRC §§ 671 ~ 678. 미국 소득세법은 위탁자신탁 규칙에 따라 ① 위탁자가 신탁재산의 운용·분배·환입(revocation)에 관한 권한을 유지하면, 신탁의 소득은 전적으로 위탁자에게 귀속되며, ② 위탁자가 이러한 권한을 상실하면, 신탁 자체가 별도의 납

이를 참조하여 우리나라 신탁세제도 1단계에서는 위탁자의 실질적 통제 여부를 판단하고, 2단계에서 위탁자의 통제력이 상실되고 수익자가 불확정된 경우에는 신탁 자체에 대해 과세권을 부여하는 2단계 판정구조를 도입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4) 신탁 실체성 부여의 한계와 보완

취소불능신탁이나 불투명신탁에 실체성을 부여하는 것은 조세법의 해석만으로 한계가 있으며, 명시적 입법근거가 필요하다. 미국 연방세법 Subchapter J⁷⁵⁾는 신탁을 과세단위로 규정하면서도, “신탁 자체는 별개의 법인격이 아니지만 과세계산 단위(trust itself is not a separate juridical person but a tax computation unit)”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경제적 지배 가능성(economic control)은 신탁의 실체성과 실질과세원칙, 그리고 수익권의 준물권성을 연결하는 핵심 매개개념에 해당한다.

3. 신탁의 실체성 부여를 통한 간접승계도입 방안

가. 개요

현행 상속세법은 수익권을 재산권의 일종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대법원 판례는 이를 수탁자에 대한 이행청구권인 채권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강하다.⁷⁶⁾ 이러한 채권적 해석은 신탁재산의 소유권 이전 시점을 불분명하게 만들어 직접승계 중심의 유산세 체계 내에서 과세 공백을 초래한다. 특히 수익자가 불확정적이거나 조건부 수익권이 설정된 경우, 현행 체계로는 경제

세주체가 되어 수익자에게 분배 시점에서 과세된다.

75) IRC §§ 641~692.

76) 대법원 1996. 4. 26. 선고 95다8432 판결 ;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1다9267 판결 ;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0다28359 판결 및 대법원 2017. 5. 18. 선고 2012두 22485 전원합의체 판결.

적 소유자를 특정하기 어려워 임대수익이나 금융소득에 대한 납세주체가 모호해지는 법적 불안정성을 야기한다.

또한 신탁은 단순한 금융상품을 넘어 자산관리·승계 수단으로 확대되고 있다.⁷⁷⁾ 특히 고령사회 진입과 맞물려 신탁 시장 규모와 상속세 과세 인원 및 세액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78), 79)} 이러한 상황에서 통상적인 직접승계 방식만으로는 승계지원 및 과세관리 측면에 한계가 있다. 결국 신탁이 단순히 자산관리수단을 넘어 기업승계나 공익신탁을 통한 사회 공헌, 사회적 약자의 재산 보호 등 복잡한 승계목적을 구현할 수 있도록 간접승계 방식의 제도화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나. 신탁을 통한 간접승계 도입방안

(1) 입법적 근거의 정비와 수익권의 재산성 확보

간접승계 방식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수익권이 독립된 재산권으로 승인되어, 상속·증여·처분의 객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가 선결적으로 확정되어야 한다.⁸⁰⁾ 즉 간접승계가 법적 정당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신탁법상 수익의 준물권성을 세법이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수익권의 재산성을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가 필요하다. 첫째, 경제적 소유자 규정의

77) KDI 경제교육·정보센터, “2024년 신탁업 영업실적”, 2025. 3. 27., https://eiec.kdi.re.kr/policy/materialView.do?num=264853&utm_source=chatgpt.com(검색일 : 2025. 10. 19.). 2024년 신탁업 영업실적[잠정]에 따르면, 국내 60개 신탁사의 총 수탁고가 1,378.1조 원으로 전년 대비 약 5.1% 증가했다.

78) 박성현, “한국 상속세 OECD 최고 수준, 이제 손볼 때가 되었다”, 미래한국, 2025. 10. 13. 기사, https://www.future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7134&utm_source=chatgpt.com(검색일 : 2025. 10. 16.). 국세청 통계포털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상속세 과세 대상 피상속인이 1만 5,760명에 이르렀다.

79) 매일경제, “증여 미루는 고령층… 60대 이상 자산 11년 새 3배 쑥”, 2023. 8. 21. 기사, https://www.mk.co.kr/news/politics/10812178?utm_source=chatgpt.com(검색일 : 2025. 10. 19.).

80) 대법원 2000. 7. 6. 선고 99다24218 판결.

신설이다. 즉 국세기본법 제14조에 재산에 대한 영속성, 이익과 위험의 귀속, 실질적 지배권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경제적 소유자 판정 기준을 명문화하여 실질과세원칙의 구체적 타당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둘째, 수익권의 독립적 재산화이다. 수익권을 단순한 청구권이 아닌 경제적 가치와 대항력을 갖춘 독립된 재산권으로 승인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수익권의 변동 시점을 자산의 실질적인 승계시점으로 파악하고, 수익자연속신탁 등에서 발생하는 권리의 이동을 명확히 추적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2) 과세단계별 실무운영

(가) 신탁 설정단계

신탁 설정단계에서의 과세는 경제적 귀속의 확정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는 위탁자가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 지배력 상실을 전제로 한다. 이러한 전제가 없다면, 신탁이 성립하더라도, 위탁자와 수탁자 간 재산이전은 법률상 명의 이전일 뿐, 경제적 소유자 변화가 실현화된 것은 아니므로,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과세 요건인 “재산적 이익의 확정적 이전”이 충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⁸¹⁾ 따라서 설정단계에서는 과세이연을 원칙으로 하고, 경제적 귀속이 수익자 단계에서 실질적으로 발생하는 시점에 과세하는 것이 실질과세원칙에 부합할 것이다.

(나) 신탁 운용단계

운용단계에서의 핵심 과세 원리는 경제적 귀속을 기준으로 소득의 귀속 주체를 확정하는 것이다. 신탁은 법률상 소유와 경제적 이익이 분리된 구조를 가지므로, 단순한 법률적 소유 형식만으로 과세주체를 확정할 수 없으며, 실질과세원칙과 경제적 실질의 우선 원칙에 따라 소득의 실질적 향유자를 기준으로 납세의무자를 확정하여야 한다.

운용단계에서 신탁소득의 과세는 분배소득과 유보소득으로 구분하는 것

81) 상속세법 제2조 및 소득세법 제14조.

이 타당할 것이다. 분배소득은 수익자가 소득을 현실적으로 향유하는 경우 이므로 수익자를 납세의무자로 하고, 유보소득은 신탁 내부에 소득이 잔존하는 경우로서 신탁을 하나의 과세단위로 보아 과세하는 방식이 합리적이다.⁸²⁾ 즉 유보소득에 대한 신탁과세는 실체가 있는 독립적 과세단위를 전제로 하므로, 신탁 자체를 별도로 실체로 인정하는 세법상 규정이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구조는 현실적으로 이중과세를 방지하고, 승계형 신탁의 간접성을 유지하면서도 과세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을 것이다. 다만, 장기신탁의 경우 주기적으로 상속세 납부 의무, 즉 독일식 상속대체율(Erbchaftsteuerersatzsteuer) 적용을 도입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⁸³⁾ 즉 독일식 상속대체율은 세대 생략 과세의 징수 연기 형태가 아닌 장기 신탁이 상속세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이고, 이를 도입할 경우 독일처럼 신탁설정 후 일정 주기(독일은 30년 주기)마다 자산가치를 평가하여 상속세를 과세하는 방안이다.

(다) 신탁 종료단계

종료단계에서의 과세는 신탁원본의 최종 귀속 시점을 과세시기로 확정하고,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1세대 1과세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운용단계에

82) 유보소득과 관련하여 법인세법상 법인과세신탁 규정인 법인세법 제5조의2와의 정합성이 문제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신탁 자체를 과세단위로 설정하는 것과 법인과세신탁을 실체로 인정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해당 취지는 궤를 같이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유보소득에 대한 과세는 신탁을 도관이 아닌 실체로 인정한 것으로서, 법인과세신탁도 유사한 입법취지를 갖고 있다. 이는 이중과세를 방지 및 조세회피방지라는 공통적인 목적을 갖는 것으로 파악된다.

83) 독일 상속세법 제15조 제2항. (상속세는 1세대 1부과의 원칙이지만, 가족재단에 귀속된 재산은 사망이란 사건이 발생할 수 없으므로,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는다. 상속대체율은 이러한 일반적인 상속제도에 비해 형평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이를 30년 주기로 세금을 과세한다는 의미이다); 독일 상속세법 제9조 제1항 제4호. (재단이나 기금이 법적으로 독립적으로 운영되면 원칙적으로 상속세의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이들이 세대를 뛰어넘는 상속세의 회피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이동식, 『독일의 지방세 제도』, 한국지방세연구원, 2012, 93면에서 재인용; 황남석, 『독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 해제 및 번역』, 북랩book, 2019, 17면.

서 발생한 소득은 분배소득이나 유보소득 체계에 따라 이미 과세가 되었으므로, 종료단계에서 다시 과세할 경우 이중과세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종료 시 신탁수익자의 지위가 확정되고, 신탁원본이 현실적으로 이전되는 시점에서 1회 과세한 후, 운용단계에서 납부된 세액을 전액공제로 정산하는 방식이 타당할 것이다. 이와 같은 구조는 형식과세보다 실질적 이전을 기준으로 귀속을 포착한다는 점에서, 실질과세원칙과도 정합성이 있을 것이다.

4. 수익권의 준물권성에 의한 경제적 소유자 개념을 통한 입법방안

가. 개 요

수익권의 준물권성과 수익권의 결부성은 위탁자의 실질적인 지배력이나 이해관계의 지속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해 신탁법 제22조(신탁재산의 독립성)에 신탁재산의 강제집행금지 및 독립성 원칙을 세법상 위탁자의 지배력 판단의 근거로 삼아, 실질적인 경제적 소유자를 확정하고 과세 공백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나. 국세기본법 개정(안)

세법은 수익권의 준물권성을 적극적으로 수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는 신탁법 제22조의 수익권의 준물권성으로 인한 권리의 내용과 신탁법 제22조의 신탁재산의 독립성을 반영하는 것이다. 미국과 독일의 사례를 참고하여 재산에 대한 영속성, 이익과 위험의 귀속, 실질적 지배요건을 명문화함으로써 국세기본법 제14조의 추상적 의미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신탁의 실체성을 기능적 물권설에 기반하여 한정적으로 인정하는 신설 규정이 필요하다. 이를 기반으로 다음과 같이 국세기본법 개정안을 제

시해 보고자 한다.

국세기본법에서 실질과세원칙 등을 <표 1>과 같이 신설한다.

<표 1> 국세기본법 개정안

구분	현 행	개정안
개정안	국세기본법 제13조(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①~⑧ (생략) ⑨ (신설)	국세기본법 제13조(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①~⑧ (현행과 같음) ⑨ 신탁법에 따른 신탁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독립된 과세단위로 본다. 1. 수익자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존재하지 않는 경우 2. 수익자가 신탁재산에 대하여 실질적인 지배·관리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고, 소득이 신탁재산 내에 유보되어 있는 경우 3. 신탁계약에 따라 신탁 자체가 납세의무를 이행하기로 선택한 경우(법인과세신탁)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③ (생략) ④ 신설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③ (현행과 같음) ④ 경제적 소유자는 재산의 가치 변동에 따른 위험을 부담하고 이익을 실질적으로 향유하는 자를 말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경제적 소유자로 본다. 1. 권리(지배권)를 영속적 또는 장기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경우 2. 이익과 위험의 실질적 귀속자인 경우 3. 자산에 대한 실질적 지배자인 경우

다. 소득세법 및 상속세법 개정(안)

세법은 신탁법상 결부성을 위탁자의 실질적인 지배력으로 해석하여 과세주체를 판단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는 수익권의 준물권성과 신탁재산의

결부성을 기초로 미국과 유사한 위탁자 지배력 기준을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 신탁의 법적 형식에도 불구하고 위탁자가 신탁재산에 대해 특정 수준 이상의 지배력을 유지하는 경우이나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수익자과세원칙에도 불구하고 위탁자가 해당 신탁재산을 직접 소유하는 것과 동일하게 보아 위탁자에게 직접 과세하는 것이 경제적 실질에 부합할 것이다.

반면, 위탁자의 지배력이 상실된 경우라면, 소득과세에서 유보된 소득에 대해 신탁 자체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상증세법상으로는 위탁자가 철회 불가능한 상태에서, 생존 이익의 유보 및 철회·변경 권한을 포함한 신탁재산에 대한 모든 통제권을 포기한 경우, 또는 신탁재산이 위탁자로부터 완전히 분리된 경우나 조건부 승계시 발생하는 과세 시기 불확정 및 납세의무자 불분명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신탁을 독립된 과세단위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이러한 기준은 현행 자익신탁과 타익신탁 중심의 분류를 지배력 유무에 따른 신탁 유형 변경으로 유도하게 될 것이다. 특히, 타익신탁의 형식을 빌려 수익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더라도 위탁자의 지배력이 유지된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위탁자 신탁에 해당하여 조세회피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수익자과세원칙을 유지하되, 위탁자 지배력 여부에 따라 신탁유형을 재분류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를 기반으로 다음과 같이 소득과세와 상증세의 개정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① 소득세법에서 신탁소득의 귀속에 관한 특례를 <표 2>와 같이 신설한다.

<표 2> 소득세법 개정안

구분	현행	개정안
개정안	소득세법 제2조의3(신탁 소득의 귀속에 관한 특례) ①~③ (생략) ④ 신설	소득세법 제2조의3(신탁소득의 귀속에 관한 특례) ①~③ (현행과 같음) ④ 신탁의 수익자가 위탁자이거나 위탁자가 신탁재산의 운영·관리·처분 등과 관련하여 다

구분	현 행	개정안
		<p>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배권 또는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 해당 신탁을 위탁자 신탁으로 보아 신탁재산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위탁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위탁자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 신탁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수익권을 가지며, 해당 수익권이 준물권적 성격을 가지고 신탁법 제 2조에 따라 제3자에게 대항하거나 신탁재산의 매각대금이나 수익에 대해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향유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를 보유하는 경우 2. 위탁자가 신탁재산의 원본 또는 수익에 대한 처분권을 가지거나, 위탁자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의 동의 없이 신탁재산을 변경 또는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 경우 3. 위탁자가 신탁계약의 변경, 수탁자의 교체, 신탁의 해지 등을 통해 신탁재산에 대한 통제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경우

② 상증세법의 입법안은 신탁법 제2조의 수익권의 준물권성과 동법 제22조의 신탁재산의 독립성을 전제로 한다. 신탁법 제22조는 신탁재산을 위탁자의 고유재산으로부터 분리시키지만, 위탁자가 수익을 통해 당해 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한다면, 이는 위탁자의 책임은 회피하고 권한만 향유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⁸⁴⁾ 따라서 신탁재산의 결부성은 지배력을 판정함에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이에 미국의 위탁자신탁 및 비위탁자신탁 법리를 기초로 하여 다음과 같이 <표 3>과 같이 상증세법 입법안을 제시한다.

84) IRC § 2036 and § 2038.

<표 3> 상속세법 개정안

구분	현 행	개정 후
개정안	<p>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정의) 1~10. (생략) 11. (신설)</p>	<p>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11호 (정의) 1~10. (현행과 같음) 11. “위탁자 신탁”이란 신탁재산을 위탁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시키거나 지배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그 신탁을 말한다. 이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자는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 지배력을 보유한 것으로 본다. 가. 위탁자가 신탁법 제22조에 의해 보호되는 신탁재산의 독립적 가치를 실질적으로 통제하거나 해당 수익권을 담보로 제공하여 경제적 이득을 취하는 경우 나. 신탁법 제2조에 따른 준물권적 성격을 가지는 수익권을 보유하거나, 해당 권한을 위탁자의 특수관계인이 보유하는 경우 다. 위탁자가 신탁을 철회하거나 신탁재산을 환원시킬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하는 경우 라. 위탁자가 수익자의 지정변경 또는 수익분배시기 및 금액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하는 경우</p>
	(신설)	<p>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6(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위탁자 신탁에 재산을 신탁하는 경우, 그 신탁재산은 수익자에게 실질적 이익이 확정되는 시점과 관계없이 위탁자가 신탁시점에 수익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의제한다. ② 위탁자가 신탁을 설정하는 때에 그 신탁재산의 가액을 수익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의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한다. 다만, 위탁자의 통제권이 완전히 소멸되는 시점에 증여가 완성된 것으로 보</p>

구분	현 행	개정 후
		<p>아 당시의 시가로 과세하며, 신탁시점에 이미 납부한 세액이 있는 경우를 이를 공제하거나 환급한다.</p> <p>③ 위탁자가 사망일 까지 제2조 제11호 각 목의 지배권중 어느 하나라도 상실하지 않은 경우, 해당 신탁재산은 제8조(상속재산으로 보는 특정재산)에 따라 위탁자의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과세한다.</p> <p>④ 증여세가 과세 확정된 신탁재산은 상속재산가액에 포함시킨다. 다만, 상속세가 과세된 후 해당 재산에 대한 기납부 증여세액을 상속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p>

V. 맺은 말

현행 상속세법은 직접승계 방식을 중심으로 과세체계를 설계되어 있어, 신탁을 통한 간접승계 구조를 독립된 과세단위로 포착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로 인해 신탁은 자산승계의 유연한 도구가 아닌 단순한 ‘보관형·관리형 제도’로 머물고 있다. 하지만, 고령화, 가업승계 수요 증가, 가족 신탁(family trust)의 확산으로 수탁자 중심의 간접승계형 신탁이 실무적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신탁을 하나의 과세단위로 인정하는 단계적 정비가 시급하며, 그 시작점은 수익권의 법적 성격을 재조정하는 하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 이에 따라 수익권의 준물권성을 통한 신탁의 실체성 부여와 이를 통한 간접승계를 제도화하기 위해 필요한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수익권의 성격을 기능적 준물권으로 재정립해야 한다. 현재의 채권

설 및 판례의 태도는 수익권을 대세효, 공시력이 약한 권리로 파악하여, 조건부 승계나 위탁자의 지배력 상실 시 수익자의 권리 보호와 과세권의 공백을 초래한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세법상 수익권을 특정 재산과 결부된 준물권적 권리로 파악해야 한다. 이를 통해 수익자가 향유하는 경제적 이익뿐만 아니라 법적 이익의 귀속 주체를 명확히 할 수 있으며, 제3자에 대한 대세효를 보장함으로써 수익자의 법적 지위를 강화할 수 있다. 또한 수익권의 준물권화는 세무상 자산가치 평가에 있어 명확한 근거를 제고하여 과세의 객관성을 확보하는 기반이 될 것이다.

둘째, 경제적 소유자 개념을 통해 신탁에 재산적 실체성을 부여해야 한다. 신탁은 법적 소유와 경제적 소유자가 분리된 제도로서, 형식적 명보다 통제권과 위험을 실제로 부담하는 주체를 판단하는 실질적 판단 기준이 되어야 한다. 현행 실질과세원칙의 추상적 의미를 극복하기 위하여 독일의 영속성·처분가능성 기준이나 미국의 통제권여부나 위험부담과 이익의 향유 등의 경제적 실질 테스트를 참조하여 경제적 소유자 개념을 구체화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위탁자의 지배력이 상실된 경우나 신탁의 불투명성이 발생하는 경우 등 제한적인 상황에서 신탁을 하나의 과세단위로 파악하는 기능적 준실체성을 부여해야 할 것이다.

셋째, 우리나라의 고령화, 사회적 약자 보호 등 다양한 목적의 복잡한 승계목적에 수용할 수 있는 간접승계방식을 제도화해야 한다. 가업승계, 복지신탁 등 복잡한 승계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재산의 형식적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고도 수익권의 설계만으로 승계 관계를 조율할 수 있는 간접승계의 법적 근거 마련이 필수적일 것이다. 간접승계는 위탁자에게서 분리된 독립된 경제적 권리로 작동하며, 위탁자 부재 시 발생하는 소유권 공백을 신탁 자체를 과세단위로 인정함으로써 해소할 수 있다. 이는 수익권의 준물권성과 신탁의 실체성 부여가 전제가 될 때, 법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구조이다.

이상과 같이 수익권의 성격 조정과 경제적 소유자 개념의 구체성을 통한

신탁의 준실체성 부여로 간접승계방식을 도입하는 것이 필수적인 과제이다. 이러한 입법적 보완은 과세공백을 방지하고 세무상 법적 안정성을 확보함으로써, 현대 신탁제도의 활성화와 사회적 약자 보호라는 정책적 목표 달성에 기여할 것이다.

參 考 文 獻

1. 국내 문헌

- 김무열, “독일의 부동산신탁 관련 조세제도와 시사점 — 부동산취득세를 중심으로 —”, 『최신외국법제정보』 제4호, 한국법제연구원, 2016.
- 배영석·김병일, “수탁자를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로 하는 신탁세제 논리의 문제점에 관한 연구”, 『세무와 회계연구』 제13권 제2호, 한국조세연구소, 2024.
- 이동식, 『독일의 지방세 제도』, 한국지방세연구원, 2012.
- 이전오, “부동산신탁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에 관한 연구”. 『성균관법학』 제27권 제2호,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소, 2015.
- _____, “신탁 관련 상속세 및 증여세의 현황과 개편 방안”, 『세무와 회계 연구』 제9권 제3호, 한국조세연구소, 2021.
- 이계정, 『신탁의 기본 권리에 관한 연구 — 본질과 독립재산성』, 경인문화사, 2017.
- 소재선·이창규 “신탁제도에 관한 연구 — Trust와 Treuhand의 비교를 중심으로 —”, 『원광법학』 제32권 제4호,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12.
- 최수정, 『신탁법』, 박영사, 2016.
- 황남석, 『독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 해제 및 번역』, 북랩book, 2019.

<인터넷 자료>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https://www.law.go.kr/>.
- 세계법제정보센터, https://world.moleg.go.kr/web/wli/lgsIInfoReadPage.do?CTS_SEQ=17814&AST_SEQ=69&nationReadYn=Y&ETC=2&searchNtnl=DE.
- 브라보 마이 라이프, “신탁제도 잘 활용하면, 무덤서도 재산 관리 가능케 해”, 2025. 2. 19., https://bravo.etoday.co.kr/view/atc_view/16045.
- KDI 경제교육·정보센터, “2024년 신탁업 영업실적”, 2025. 3. 27., https://eiec.kdi.re.kr/policy/materialView.do?num=264853&utm_source=chatgpt.com.
- 박성현, “한국 상속세 OECD 최고 수준, 이제 손볼 때가 되었다”, 미래한국, 2025. 10. 13. 기사, https://www.future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7134&utm_source=chatgpt.com.

매일경제, “증여 미루는 고령층 … 60대 이상 자산 11년 새 3배 쑥”, 2023. 8. 21. 기사,
https://www.mk.co.kr/news/politics/10812178?utm_source=chatgpt.com.

2. 국외 문헌

- Anna GUGGI, *Die Treuhand im Ertrag-Umsatz und Verkehrsteuerrecht*, Des akademischen Grades einer Magistra der Rechtswissenschaften an der Karl-Franzens Universität Graz, 2014.
- Boris I. Bittker, Elias Clark and Grayson M.P. McCouch, *Federal Estate and Gift Taxation*, Ninth Edition, Thomson, 2005.
- Boris I. Bittker and Lawrence Lokken, *Federal Taxation of Income, Estates and Gifts* 4th ed. Vol. 1, Thomson, 2007.
- Frederick R. Franke, Jr, *TRUST LITIGATION The Enforcement of Beneficiary Rights*, Maryland State Bar Association, November 4, 2011.
- G. Bogert and G. Bogert, *The Law of Trusts and Trustees* 2d ed., West Publishing Company, 2020.
- JEFFREY A. COOPER, EMPTY PROMISES : SETTLOR’S INTENT, THE UNIFORM TRUST CODE, AND THE FUTURE OF TRUST INVESTMENT LAW, *BOSTON UNIVERSITY LAW REVIEW* Vol. 88 No. 5, Boston University School of Law, 2008.
- John H. Langbein, The Contractarian Basis of the Law of Trusts, *Yale Law Journal* Vol. 105 No. 3, Yale Law School, 1995.
- Oliver Arte and Katharina Petri, Business Trusts — der Trust im kommerziellen Umfeld, *RECHT*, Der Schweizer Treuhänder, 2004.
- Sarah Worthington, *Equity*, 2nd ed, Oxford University Press, 2006.
- Wittuhn, *Das internationale Privatrecht des Trust*, Peter Lang GmbH, Internationaler Verlag der Wissenschaften, 1987.

<인터넷 자료>

코넬 로스쿨, <https://www.law.cornell.edu/cfr/text/26/chapter-I>.

미국 연방대법원, <https://www.supremecourt.gov/>.

독일 연방대법원(Bundesgerichtshof—BGH), <https://www.bundesgerichtshof.de>.

독일 연방대법원 영어 페이지, <https://www.bundesgerichtshof.de/EN/Home/home>

BGH_node.html.

Beneficial Ownership Guide for Germany, “Taxation of Trusts in Germany : New Guidelines for Transparency and the Gift Taxation of Distributions”, POELLATH, 25. 4. 2022., <https://www.pplaw.com/en/insights/taxation-trusts-germany-new-guidelines-transparency-and-gift-taxation-distributions>.

United States Senate Committee on Finance, “ECONOMIC SUBSTANCE DOCTRINE”, <https://www.finance.senate.gov/imo/media/doc/Leg%20110%20100407agament.pdf>.

ESA LAW, “IS A Trust A Legal Entiy? If NOT, WHAT IS IT?”, Jan 17, 2024., <https://esapllc.com/is-a-trust-a-legal-entity-2024/>.

<Abstract>

**A Study on Granting Entity Status to Trusts and
the Introduction of Indirect Succession through
the Quasi-Property Nature of Beneficial Rights**

Kim, Jong Hae* & Kim, Byung Il**

This study highlights the limitations of the current inheritance and gift tax law (hereinafter “Inheritance and Gift Tax Act”), which is centered on direct succession, and proposes a step-by-step framework to legislate an indirect succession model that reflects the essential characteristics of trusts by linking the quasi-real right nature of beneficial interests with the substantive entity of trusts.

First, the nature of beneficial interests must be redefined from a relative contractual right to a functional quasi-in-rem right tied to specific assets. Granting beneficial interests independence and enforceability against third parties through quasi-real right recognition means treating trust property as an independent object of rights, separate from the settlor’s or beneficiary’s personal property. This provides the logical foundation for elevating trusts beyond mere contractual relationships into independent aggregates of assets and legal entities. In other words, only when beneficial interests acquire a property-right character can trusts secure objective substantive existence beyond personal connections.

Such quasi-real right characteristics of beneficial interests are concretized through the introduction of the concept of the economic owner. To reflect the trust’s unique separation of legal ownership and economic benefit, the economic owner concept — determining the taxable subject based on effective control and risk-bearing — is indispensable. Particularly when the settlor’s control is extinguished or the beneficiary structure is highly designed, the trust itself, built upon the established foundation of beneficial interests, can be regarded as an independent economic entity and taxable unit. This quasi-entity status ensures objectivity and continuity in taxation.

* Primary Author : Former Adjunct Professor, Kangnam University

** Corresponding Author : Former Professor, Kangnam University

Therefore, the legal foundation secured through the quasi-real right recognition of beneficial interests, combined with the substantive entity of trusts derived from the economic owner concept, forms the core framework of an indirect succession-based taxation model that enables asset succession without direct transfer of property rights.

This jurisprudential shift proposed by the study not only resolves gaps and uncertainties in the current tax law but also contributes to achieving the trust's inherent policy objectives—facilitating efficient asset succession in an aging society and protecting socially vulnerable groups.

▶ **Key Words** : quasi-proprietary nature of beneficial interest, economic owner, beneficial owner, opaque trust, irrevocable trust, indirect succession